

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0호

제1조(「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바목 중 “장애인(1~3급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“장애인(4급 이하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오산시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“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장애등급 4급에서 6급까지에 해당하는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장애인(1~3급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